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057 제출연월일: 2024. 6. 27.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을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은"으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보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지원센터는"을 "서비스기관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생 략)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	②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
<u>광역지원센터는</u> 제1항에 따른	관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
터) ① (생 략)	터)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2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u><삭 제></u>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	<u><삭 제></u>
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	
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네 소
<u>속 아이돌보미</u> 를 서비스기	란 내
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⑤ ~ ⑦ (생 략)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 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생략)

 <u>아이돌보미</u>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 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 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 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게 보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서비스기관은 -----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		
1	안 제13조(서비스	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게		
	기관의 임무 등)	보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0	안 제14조(표준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복무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기	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조(서비스 기관의 임무 등)	제1호 :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2	안 제14조(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제1호 :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2. 상세 사유

- 개정안 제1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비용의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광역지원센터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 서비스기관에서 손해배상보험 가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재원은 이미 전액 국비(65%)와 지방비(35%)로 지원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개정안 제14조에 따른 현행 법률에 따라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체결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광역지원센터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 서비스기관이 근 로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관 종사자 인건비는 이미 전액 국비(65%)와 지방비(35%)로 지원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제정안은「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O 해당사항 없음

Ⅳ. 작성자

Ο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정재우	서진희	황우정	최성지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진희	02-2100-6365	march0325@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